

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

사 건 2000가단000 손해배상(자)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◆

위 사건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◇◇◆ 는 소송기록상 피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의 잘못표시임이 명백하므로 이의 경정 을 신청합니다.

첨부서류

1. 주민등록표등본 1통.

1. 송달료납부서 1통.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소송기록보관법원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	
불복절차 및 기간	·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) ·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, 제425조, 제396조)			
비 용	·인지액: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송달료: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
기 타		직권으로 또는 당	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송달 및 재판